

발간등록번호

12-B552783-000066-01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



제1장 서론

1



제2장 보호 대상 기술 및 기술유출 사례

5

1절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6
2절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9
[유형1] 보호 대상 기술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여 활용한 경우	11
[유형2] 보호받는 기술 자료를 반출하지 않고 해당 기술 정보만 사용한 경우	18
[유형3] 보호받는 기술을 반출 하였으나 활용하지 않은 경우	21
[유형4] 해커 등 계약 관계가 없는 외부인에 의해 기술을 탈취 당한 경우	24
[유형5] 계약 등 업무 과정에서 연결된 외부인에 의해 기술을 탈취 당한 경우	28



제3장 연구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

31

1절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술의 개념 및 범위	32
2절 기술유출의 책임 규정	38





제4장 자주 묻는 기술유출 방지 Q&A

43

제5장 기술유출 방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49

부록 기술유출 관련 법령

51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 ▶ 우리 정부는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년부터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보안시설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 관련 통계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 2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은 총 133건이다.

〈 표1 〉 '17년~'22년 2월까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현황¹⁾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2월	합계
산업기술	24	20	14	17	22	2	99
국가핵심기술	3	5	5	9	10	2	34
합 계	27	25	19	26	32	4	133

- 동 기간 발생한 해외 기술유출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이며,²⁾
- 만약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OLED, 조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 발전 및 경쟁력 약화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

1) 김서중 기자,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책 서둘러 마련해야'(국제뉴스, 2022.5.10.)

2) 송기영 기자, '국정원 "5년간 산업기술유출 시도 99건...22조원 규모"'(조선일보, 2022.4.2.)

- ▶ 2021년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적발한 기술유출 527건 가운데 71%인 375건이 내부자의 소행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7년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년도	구분 계(건)	기술 유형		피해기업 규모		국내외 유출		유출자 현황	
		산업기술	영업비밀	중소기업	대기업	국내	국외	내부자	외부자
'17년	140	12	128	128	12	127	13	115	25
'18년	117	10	107	106	11	97	20	89	28
'19년	112	6	106	104	8	100	12	77	35
'20년	135	7	128	122	13	118	17	77	58
'21.6월	23	-	23	22	1	22	1	17	6
합 계	527	35	492	482	45	464	63	375	152

- ▶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한 기술유출 건 가운데 71%가 내부자 소행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³⁾

3) 이관주 기자, '기술유출 71% 내부자 소행... 클라우드 악용 등 수법도 진화'(아시아경제, 2021.11.16)

최근 5년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수사 현황(전국)

년도	구분 계(건)	검거 (건)	기술 유형		피해기업 규모		국내외 유출	
			산업기술	영업비밀	중소기업	대기업	국내	국외
2017년	140	336	12	128	128	12	127	13
2018년	117	352	10	107	106	11	97	20
2019년	112	381	6	106	104	8	100	12
2020년	135	345	7	128	122	13	118	17
2021년	89	224	10	79	80	9	80	9

- ▶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업의 대표적 내부자인 ‘연구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기술유출 사례를 활용한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제2장

보호 대상 기술 및 기술유출 사례



제2장 보호 대상 기술 및 기술유출 사례

1절.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 ▶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술이 정보 유출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 ▶ 우리나라가 법으로 보호하는 기술은 ‘영업비밀’, ‘산업기술’ 및 ‘중소기업 기술’ 등이다. 대표적인 보호 대상 및 관련 법률은 아래 표와 같다.
 -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서 영업비밀 혹은 산업기술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보호받는 기술이 되기 위한 요건을 인지하고 그 요건에 맞게 기술을 보호하여야 함

〈 표2 〉 대표적인 보호대상 및 관련 법률

No	보호대상	보호대상 세부내용	관련 법률
1	영업비밀	비밀성 있게 관리되는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등 예시) 연구개발 보고서, 기계 설계도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2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신기술, 핵심부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기술보호법’)
3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비밀성 있게 관리되는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4	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 관련 국방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 등 예시) 무기 제작 기술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이하 ‘방산기술보호법’)
5	기술 자료	경제적 가치성을 가진 기술 또는 정보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고시된 기술로 12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73개 기술, [부록1] 참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술로 6개 분야(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286개 기술, [부록2] 참고

- ◎ 이중 ‘영업비밀’은 회사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산업기술’은 고시 및 지정 등의 절차가 있어 연구자들이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인지, ‘산업기술’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그 기술 정보를 유출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쉽다.

◎ 하지만, 고시나 지정 등의 절차가 없는 기술이나 특별하게 관리되지 않는 기업의 다양한 정보는 공개해도 되는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 ▶ 관련 판례에 따르면 (i)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ii)기업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사용하여 얻은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 또한 그 기술의 정보라고 하여 제품을 만드는 설계도, 주요 배합 등 제품을 똑같이 만들기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험 자료 등 상당한 노력 등이 투자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 ◎ 그러므로 연구자는 대외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정보는 모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 ▶ 더욱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에 의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다.

* 사례 1-5 참조



참고 산업기술에 속하지 않는 기술이지만 처벌 받은 경우⁴⁾

→ 사건 개요

- A社は OLED관련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TV, 스마트폰 액정화면 등에 널리 이용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엔 포함되지는 않은 기술 'X'를 보유하고 있었다.
- A社에 근무하던 甲은 퇴사를 결심하면서 기술 'X'의 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반출하였다.⁵⁾
- 이후 甲은 B社에 입사하였고, B社は 기술 'X'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였다.
- A社は 甲을 업무상배임 및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다.

→ 법원의 판단

- 甲이 유출한 기술 'X' 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A社の 보안 관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ii)A社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 될 수 있다.
- 이러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무단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

→ 유출한 자의 책임

⇒ 甲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천만원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정보 또는 기술 자료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여 외부 유출 시 처벌될 수 있다!

4) 수원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64 판결

5) 甲은 A社の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①입사 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A社は 연구소의 모든 파일을 전산실 서버에만 저장하여 관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용 컴퓨터는 물론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 A社の 영업비밀

2절.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 ▶ 기술 유출이란?
- ▶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의 ‘기술’은 서면이나 파일로 작성되어 저장된 ‘기술 자료’ 형태 또는, 눈으로 확인이 어렵지만 연구자 등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기술 정보’ 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다.
- ▶ 이러한 ‘기술 자료’나 ‘기술 정보’를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유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기술유출에 해당된다.
- ▶ 이를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 법령별 침해행위는 아래 표와 같다.

자료를 저장할 수 없도록 시큐어디스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으므로, 甲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은 회사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A社の 기술 자료를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③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A社の 기술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④ A社の 기술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이 전제되었다.

〈 표3 〉 주요 법령 및 침해 행위

관련 법령	침해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취득 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 등
산업기술보호법	- 부정취득 또는 비밀유지의무위반 관련 행위 - 국가핵심기술 부정수출 및 해외인수·합병행위 등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부정취득 또는 부정취득행위 인지 후 취득·사용·공개행위 - 중대과실로 인한 부정취득행위 미인지 상황에서 취득·사용·공개행위 등
방산기술보호법	- 부정취득 또는 부정취득행위 인지 후 취득·사용·공개행위 - 중대과실로 인한 부정취득행위 미인지 상황에서 취득·사용·공개행위 등
상생협력법	- 위탁기업이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위탁기업이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등
하도급법	-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보호받는 ‘기술 자료’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메일 등에 소유하는 행위도 기술유출로 판단될 수 있다.
 - 또한, 자료를 반출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도 기술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
- ▶ 대표적인 기술유출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1 보호 대상인 기술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여 사용한 경우



- 연구자가 보호 대상인 기술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경쟁사 등으로 이직하여 해당 기술 자료를 사용한 경우로,
 - (i)USB에 저장하여 나오거나, (ii)이메일로 전송하거나, (iii)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 자료를 반출하여,
 - (i)이직할 회사 내에서 공유하거나, (ii)이직할 회사에 제출하거나, (iii)이직할 회사 서버나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iv)이직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에게 해당 자료를 공유 또는 전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이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호 대상인 기술 자료를 반출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산업기술유출 및 침해행위 등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⁶⁾
 - 또한 유출된 기술 자료가 (i)원본이 아닌 새롭게 재작성된 자료이거나, (ii)자료 제공 대상이 경쟁사 또는 동종업계가 아닌 경우는 물론 (iii)자료 제공 대상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기술유출에 포함된다.
 - 특히 연구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권리는 연구자가 소속된 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유출시 처벌받을 수 있다.⁷⁾
- 6) 회사의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임직원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한 경우, 그 기술이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하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 그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 산업 기술유출 및 침해행위가 성립한다.(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 임직원이 회사와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비밀유지약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 최근에는 우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경쟁사가 고액의 급여 또는 좋은 근무환경을 약속하며 핵심기술의 유출을 제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 금품이나 도박, 술 등을 이용하여 관계를 맺고 이를 윤리적 결함으로 연결시켜 정보를 얻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 국가연구개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직무발명의 요건을 갖춘 경우, 「발명진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종업원이 창작한 기술 정보인 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여 소유하였다면 사용자(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자가 된다.

**사례1-1** 고객의 대가 등을 약속받고 기술을 유출한 경우⁸⁾

→ 사건 개요

- A사는 첨단 이동통신 중계기 기술 'K'를 보유한 업체로 'K'기술 자료에 대해 프로젝트 팀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였으나 서류에 영업비밀이라는 표기는 하지 않았다.
- 甲은 A사의 영업총괄상무이자 'K'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K'기술 프로젝트 팀장으로 기술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는데도 경쟁사인 B사에 'K'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상당한 대가를 제공 받았다.

→ 법원의 판단

- A사는 'K'기술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 그러므로 유출된 'K'기술 자료에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A사의 임직원이면 누구나 해당 자료 모두 비밀로 인식할 수 있는 실질을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甲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상당한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출한 자의 책임

⇒ 甲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3년) 및 약 1억 3천만 원 추징


Check Point!

- ③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표시하지 않은 정보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 자료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8)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노2568 판결



사례1-2 재직 중 저장·보관한 기술 자료를 이직하여 사용한 경우⁹⁾

→ 사건 개요

- A社は 연구개발을 통해 식품 제조 기술인 'Y'를 개발하고 이 기술을 활용한 'H'제품을 제조·판매하였으며 관련 기술 자료는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
- A社에서 기술 개발업무를 총괄했던 甲은 자신의 개인용 노트북에 'Y'기술 관련 자료들을 정당한 절차 없이 저장·보관하고 있었는데, 해당 파일 보유사실을 A社에 고지하지 않고 퇴사하였다.
- 그 후 甲은 A社の 경쟁사인 B社에 입사하여 유사 제품 연구개발에 참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Y'기술 관련 자료를 제목만 수정하여 B社에 제출하였다.
- B社は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신규 제품을 출시·판매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식품에 있어 제조 기술은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이고, A社가 'Y'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며,
- 'Y'기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조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A社가 기술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하였으므로 'Y'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또한 B社가 절취·기망·협박이 아니더라도 'Y'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기술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 'Y'기술을 이용하여 신규 제품 개발, 생산, 판매하는 등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이상,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유출한 자의 책임

- ⇒ 甲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B社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약 8억 7천만원 손해배상책임


Check Point!

- (i)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중요 정보이고, (ii)정보취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었으며, (iii)비밀로 유지·관리 되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재직 시 습득한 기술자료를 타 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기술유출에 해당한다!

9) 의정부지방법원 2011.9.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

**사례1-3** 재직 중 본인이 연구한 자료를 퇴직 후 사용한 경우¹⁰⁾

→ 사건 개요

- 甲은 LED 제품 생산 업체인 A社の 부사장 겸 기술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제품 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 및 시장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甲은 B社로부터 A社가 지급하는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약속 받고, 본인이 연구한 A社の 연구 자료 'X'를 그대로 가지고 퇴사한 후, B社에 입사하였다.
- 그 후 甲은 연구 자료 'X'를 인쇄하여 B社 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 위와 별개로 乙은 A社에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며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급여와 근무 조건이 좋은 B社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A社の 기술 자료 'Y'를 절취하여 B社에 제공한 후, B社로 이직하여 영업이사로 재직하였다.

→ 법원의 판단

- 연구 자료 'X'와 기술 자료 'Y'가 (i)영업활동에 바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되지 않았고, (ii)B社에게 아무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iii)누구나 실험을 통하여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고 해당 정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해당 자료는 영업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유출한 자의 책임

- ⇒ 甲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 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 ⇒ 甲, 乙과 B社は A社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


Check Point!

- 본인이 연구한 자료도 유출시 처벌 될 수 있다!
- 실제 사용되지 않았고, 누구나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10)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사례1-4 이직을 위해 영업비밀을 해외법인에 유출한 경우¹¹⁾

→ 사건 개요

- A社は 대한민국 법인이자 자동차용 LED 시장에 선진입한 업체로, 첨단기술이자 산업 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X'를 보유하고 있었다.
- B社は 해외법인으로서 자동차용 LED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업체이자 A社の 경쟁사였다.
- 甲은 A社에서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A社를 퇴사하고, B社에 입사 하며 '예전 회사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 甲은 B社로 이직한 후 성과를 내기 위해 A社の 연구원인 乙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 하며 기술 'X'에 대한 자료 유출과 B社로의 이직을 제안하는 등 B社 입사 시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 乙은 B社로 이직을 결심하고 A社の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술 'X'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甲에게 제공한 후 B社로 이직하였고, B社 입사 시 甲과 동일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 甲은 기술 'X'에 대한 사진을 복제, 편집하여 B社の 연구원들과 공유하였다.

→ 법원의 판단

- B社가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A社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기업이고,
- B社가 甲과 乙에게 서약서를 받은 것만으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¹²⁾

→ 유출한 자의 책임

- ⇒ 甲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징역2년(집행유예 3년)
- ⇒ 乙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 B社は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6천만원



- 기술 정보를 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도 기술유출 행위이다!
-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기술 보호 법제가 적용될 수 있고, 양벌규정 역시 인정될 수 있다!

11)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12)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자신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사례1-5 자료를 재작성하여 유출한 경우¹³⁾

→ 사건 개요

- A사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로 산업기술인 'X'설비를 제작하고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였으며, 甲과 乙은 A사에서 각각 수석연구원과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丙은 전직 A사의 연구원으로 현재는 중국에 광학 부품 제조 및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사를 설립하였다.
- 丙은 B사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甲, 乙에게 'X'설비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 이에 甲은 'X'설비 관련 파일을 전송 후 다른 파일로 재작성하여 丙에게 공유하였으며, 乙은 'X'설비 관련 도면을 업무수첩에 옮겨 적은 뒤 캐드 파일로 재작성하여 丙에게 전달하였다.

→ 법원의 판단

- 甲, 乙은 기술력이 미약한 B사에 'X'설비 관련 공지 기술을 가르쳐주어 장비를 개선하고 이를 A사에 납품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 (i)甲과 乙이 해당 장비 뿐 아니라 B사 업무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점, (ii)甲과 乙이 주기적으로 B사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가명을 사용하였고 (iii)회의 참석 관련 사항을 A사에 보고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甲과 乙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
- 이에, 甲과 乙은 A사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 자료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A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를 누설 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

→ 유출한 자의 책임

⇒ 甲, 乙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각 징역 2년



- ③ 원본이 아닌 복제, 편집한 자료를 유출하여도 처벌될 수 있다!
- ③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다.

1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955 판결

유형2 보호받는 기술 자료를 반출하지 않고 해당 기술 정보만 사용한 경우 

- 연구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자료를 반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자는 이전 회사의 여러 가지 정보를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그 정보가 업무상 지득한 일반적 지식인 경우, 인격적 성질의 정보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사용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하지만 그 정보가 업무상 지득한 특수한 지식인 경우, 즉 업무상 지득한 내용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지식인 경우라면,
 - 그 정보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머릿속의 기억일지라도 활용하면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2-1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정보를 활용한 경우¹⁴⁾

➔ **사건 개요**

- A사는 전자부품 및 장비물 개발 및 제조회사로, 甲은 A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장비물을 제조하는 기술인 'X'를 개발하고 관련제품 생산을 총괄하다가 퇴사하였다.
- 乙은 A사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 'X'의 개발과 관련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하였다.
- 그 후 甲, 乙은 반도체 부품의 생산,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한 B사를 함께 설립한 후 A사에서 재직하며 지득한 'X' 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판매하였다.

➔ **법원의 판단**

- 'X' 기술은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 공정 정보 및 기술적 노하우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A사가 상당 정도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들여 개발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甲, 乙이 별도의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더라도, A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영업 비밀을 활용하였다면 침해에 해당한다.

➔ **기술을 유출한 자의 책임**

- ⇒ 甲, 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 甲, 乙, B사는 A사에 2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



➔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도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정보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유출 또는 활용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14)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나2008434 판결



사례2-2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직한 경우¹⁵⁾

→ 사건 개요

- 甲은 A社の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동종업계 기업인 B社 설립을 계획한 뒤 퇴사 하면서, A社の 'X' 제품 기술개발 담당자 乙, 丙, 丁에게 B社로의 이직을 제안하였다.
- 乙, 丙, 丁은 B社로 이직하였고, 얼마 후 B社は A社の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 이를 인지한 A社가 B社를 상대로 모조품 생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법원의 판단

- A社の 'X' 제품 기술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 왔던 정보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 영업비밀의 취득은 (i)문서, 사진,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나, (ii)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나, (iii)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
- 그러므로, B社가 A社の 'X' 제품 기술개발 담당자 乙, 丙, 丁을 스카우트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B社の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⁶⁾



- 유형물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득하고 있는 연구원이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지득한 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16) 다만 본 판결은 영업비밀을 취득시점이 부정경쟁법의 관련 법령 시행 전으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였다.

유형3 보호받는 기술을 유출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구자가 재직 중 적법하게 반출하여 보유하던 자료라고 하더라도, 퇴직 시 통상적으로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발생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자료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례3-1 기술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임의로 반출한 경우¹⁷⁾

➔ 사건 개요

- 甲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 기계 제조업체인 A社の 개발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 甲은 A社를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등이 포함된 기술 자료 'X'를 허가 없이 반출하였다.

➔ 법원의 판단

- 甲이 반출한 기술 자료 'X'는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¹⁸⁾, A社の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파일 'X'의 활용여부와 상관없이 甲은 A社를 퇴사하면서 임의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X'를 가지고 나온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 유출한 자의 책임

➔ 甲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 ➔ 영업비밀이 아닌 자료라고 하더라도 반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 반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22. 선고 2014고단3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노5415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도 2160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1958 판결
 18) 본 판례에선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례3-2 정당한 절차를 통해 기술 자료를 반출한 후 퇴사 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¹⁹⁾

→ 사건 개요

- 甲은 A社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영업비밀보호서약을 하고, 재택근무를 목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A社의 영업비밀 자료 'X'를 반출하여 개인컴퓨터에 보관하였다.
- 이후 甲은 A社를 퇴사하면서 '본인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한 문서, 도면, 파일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료 'X'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 그 후 甲은 B社에 입사하여 자신의 업무 컴퓨터에 자료 'X'를 옮겨 놓았다.

→ 법원의 판단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며,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이에 甲이 재택근무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파일들을 반출한 것이더라도 퇴사시에는 'X'를 A社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²⁰⁾

→ 유출한 자의 책임

⇒ 甲은 ~로 벌금 ~원


Check Point!

- 기술을 유출하여 활용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활용할 부정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퇴사 시 이전 회사의 정보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 좋다!

1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20)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3-3 개인 메일 계정으로 기술 자료를 반출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²¹⁾

→ 사건 개요

-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H'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 甲은 A사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자로 'H' 주요기술 자료들을 A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논문준비'라는 제목으로 압축하여 자신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 甲은 A사 퇴사 후 동종유사 업종인 B사에 입사한 뒤 B사 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H' 주요기술 자료들은 사용하지는 않았다.

→ 법원의 판단

- 甲이 유출한 'H' 주요기술 자료를 A사 이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메일 계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전송한 행위는 산업 기술유출에 해당한다.

→ 유출한 자의 책임

⇒ 甲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호 되는 기술 자료를 이메일 전송,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는 등의 행위도 기술유출 행위이다.
- 기술유출은 제3자의 해당 기술 사용여부와 상관없다!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고단4851 판결,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노2680 판결).

유형4 해커 등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에게 공격 당한 경우
 

- 위의 사례들과 같이 본인의 행동에 의해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 기술을 탈취 당하는 경우도 있다.
 - 사이버공격,²²⁾ 이메일, 웹하드,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이용 해킹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 이러한 경우 회사와 개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안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보안 규정 준수 등 대비가 필요하다.

22)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공 또는 민간 정보통신망의 정보 무결성을 해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사례4-1 경쟁업체에서 인터넷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파괴한 경우²³⁾

→ 사건 개요

- A사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업의 선두주자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숙박정보를 수집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 동종 경쟁업체인 B사의 연구자들은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여 A사의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지속적으로 무단 복제하고 가공하여 사용하여 A사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 법원의 판단

- A사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인 자신들의 성과에 해당하며, B사는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A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 탈취한 자의 책임

- ⇒ B사는 부정경쟁법 위반으로 10억 손해배상


Check Point!

- 타인의 기술이나 정보를 탈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23)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



사례4-2 해커가 인터넷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파괴한 경우²⁴⁾

→ 사건 개요

- 중국인 해커 甲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인 A社の 서버에 4회에 걸쳐 침입하여 A社の 전체 회원 약 1,800여만 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 등)를 유출시켰다.

→ 사건 경과

-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A社は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에게 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 이에 대응하기 위해 A社は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하였다.

Check Point!

-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실시 필요
- 주요 데이터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백업 필요

2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사례4-3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산업기술 탈취 및 유출을 당한 경우²⁵⁾

→ 사건 개요

- 랜섬웨어 공격그룹 甲은 일본 중장기 기업 A社를 해킹하여 산업기술을 탈취하고,²⁶⁾ A社의 경쟁업체인 B社, C社, D社 등에 이메일로 A社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 그로 인해 A社は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Check Point!

- 최근, 랜섬웨어 공격은 해킹한 정보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데에서 나아가 경쟁사로 정보를 유출해버리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랜섬웨어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악성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이메일을 통해 랜섬웨어 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목이나 발신자가 의심스러운 경우 메일 확인을 자제하고,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실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있다!

25)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mtype=1&idx=97294>

26) 랜섬웨어란, 컴퓨터의 모든 파일들을 암호화해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형태로 공격하는 악성 바이러스의 한 형태이다.

유형5 계약 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인에 의해 기술을 탈취 당한 경우



- 공동연구 등의 과정에서도 기술을 탈취 당할 수 있다.
 - 다수의 기업이 공동연구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권리화되기 이전의 아이디어나 권리화 자체가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관리되지 못하고 외부에 기술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²⁷⁾
 - 또한, 협력업체 직원이 출입이 허용된 것을 이용하여 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다.

- 이렇게 유출된 정보 또한 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므로 제3자에 의한 기술유출 리스크 대응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
 - (i) 기업 간 제품 납품 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 및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 (ii) 공동 R&D 및 조인트벤처 설립 등 과정에서 공동기술개발약정 및 조인트벤처 설립약정에 비밀유지 규정을 포함하거나,
 - (iii) 공동기술개발약정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하거나,
 - (iv) 외부에 샘플을 제공하기 이전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상생협력법에 따른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및 시행해볼 수 있다.

- 위의 조치 방안은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으나, 누락되지 않도록 연구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7) 컨설팅, 투자 유치, 사업 입찰 등의 과정에서 자주 발생된다.



사례5-1 하청업체 기술 자료를 합작법인의 협력사로 유출한 경우²⁸⁾

→ 사건 개요

- A사는 하청업체인 B사를 대상으로 B사가 보유하고 있던 제3의 기업인 N사의 기술 자료 'X'를 요구하여 취득하였다.
- 이후 A사는 A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합작법인 C사에게 'X'를 전달하였고, C사는 납품관계에 있던 중국의 D사에 'X'를 제공하였다.
- 하지만 D사는 'X'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품 개발에 실패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 A사는 '기술 자료요구 서면 사전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 유출한 자의 책임

- ⇒ A사는 기술 자료요구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 부과
- ⇒ A사는 기술 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2억 5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 하도급 관계에 있는 경우 하도급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 하도급 계약상의 목적물 외에 하도급업체가 보유할 권한 있는 기술 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 요구 시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이렇게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는 유용해서는 안된다!

28)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65435>, 이에 대하여 A사는 법원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진행 중에 있다.



사례5-2 공동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유출한 경우²⁹⁾

→ 사건 개요

- 甲이 운영하는 A社は OLED 증착 및 합착장비 등을 개발·납품 하고 있었다.
- A社は B社와 공동개발 및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여, A社は 합착장비 및 설비 개발과 B社は 공정 및 재료 개발을 각각 담당하고, 제작된 장비는 B社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 甲은 공동개발과정에서 공정도, 시제품 촬영 사진, PPT 자료, 실험 데이터 등 B社の 영업비밀이 포함된 기술 자료를 보유하게 되었고, 향후 이 자료를 사용하여 거래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 또한 甲은 고객사 C社가 A社를 방문하자 B社の 기술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이메일로 기술 자료를 송부하였다.

→ 법원의 판단

- 甲은 영업비밀 사용 및 누설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 (i) A社は B社와 공동개발계약서에서 정한 비밀유지약정을 하였던 점, (ii) 甲이 취득한 자료는 하단에 ‘Confidential’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자료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甲은 기술 자료에 B社の 영업비밀이 포함 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B社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원활한 관계유지 및 향후 거래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B社の 영업비밀을 사용 및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³⁰⁾

Check Point!

-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기술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하도록 하고, 제공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며 자료를 제공받는 당사자와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29) 수원지방법원 2017.12.7.선고 2016노9156

30) 본 판결은 1심 법원의 판단으로 甲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달(집행유예 1년) 선고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甲이 유출한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만약 甲이 유출한 자료가 B社の 영업비밀에 해당하였다면 유죄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3장

연구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



제3장 연구자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

- ▶ 보호받는 기술과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알아본다.
 -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술유출 관련 법령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 대표적이며,
 - ◎ 그 외에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이 있으며, 각 법령은 보호 대상, 처벌 등이 상이하다.
 - ◎ 이제부터 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1절.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술의 개념 및 범위

-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이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을 요건으로 한다.³¹⁾

31) 위 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이 실무상 특히 문제됨. 종래 비밀관리성 요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였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이후 비밀관리성 요건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가 다시 ‘비밀로 관리될 것’으로 개정되는 등 점차 보호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

- ▶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 산업기술보호법이 요구하는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며,³²⁾
 -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³³⁾
 -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은 통상의 산업기술 이외에 ‘국가핵심기술’을 별도로 규정하고, 국가핵심기술 수출 시 사전 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 산업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나, 국가핵심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³⁴⁾
- ▶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재하고 있는 주요 기술유출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³⁵⁾

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 32)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어도 된다.
- 33)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 34)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등 12개 분야에서 73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0호 폐지제정 2021. 7. 14).
- 35)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도 부정취득행위,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인지한 후 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유용·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표3〉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의 보호범위 및 기술유출 행위 유형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보호대상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개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제2조 제2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제2조 제1호)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술(제2조 제2호, 제9호)
유출행위 유형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사용, 공개행위(제2조 제3호 가목).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사용, 공개행위(제14조 제1호)	좌동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사용, 공개 행위(제2조 제3호 라목).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사용, 공개 행위(제14조 제2호, 제6호의3, 제8호)	좌동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제2조 제3호 나목, 마목).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제14조 제3호, 제4호)	좌동
	사후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제2조 제3호 다목, 바목).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제14조 제3호, 제4호)	
-	-	적법한 승인·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제14조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제14조 제7호)	

- ▶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은 모두 유출행위에 있어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을 유출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 ◎ ‘부정한 수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의미한다.³⁶⁾
 - ◎ 부정한 수단의 예로는 (i)시제품이나 비밀 촉매 등 영업비밀이 화체된 유체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ii)영업비밀 저장매체를 해킹하거나 위 장소에 무단침입하거나, (iii)그 매체물에 대한 잠금장치를 개봉한 후에 영업비밀인 정보를 복제하거나 암기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 ◎ 또한, (iv)도청이나 기망행위를 통해 기억소지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나,³⁷⁾ (v)경쟁자의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³⁸⁾
 - ◎ 다만,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해 영업비밀을 수집한 것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수단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 ▶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은 모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사용이나 공개를 유출행위로 두고 있는데,
 - ◎ ‘비밀유지의무’는 당사자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된다.
 - ◎ 다만, 비밀유지의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술발전의 저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3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37) 부정경쟁방지법(해설 및 판례), 사법연수원, 2010, 90면.

38)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영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되기도 하고, 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되기도 한다.³⁹⁾

- ◎ 한편, 비밀유지약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 규정이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신의칙 등에 의해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⁴⁰⁾

▶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은 중요기술인 만큼 별도의 규제도 하고 있는데,

- ◎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 부정한 수단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의한 침해행위 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을 함에 있어서 적법한 승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되었음에도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등도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⁴¹⁾

▶ 한편, 판례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해서도 보호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등

40)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에는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인정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41)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8호

- 예컨대 회사 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 또한, 회사 직원이 재직 중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한 것이더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⁴²⁾
- ▶ 그 외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⁴³⁾, 방산기술보호법상 ‘방위산업기술’⁴⁴⁾, 상생협력법상 ‘기술 자료’⁴⁵⁾,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⁴⁶⁾ 각 법제에 따라 보호 받는다.

4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43)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도 포함된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44) 방산기술보호법상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의미함(방산기술 보호법 제2조 제1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에서 8대 분야 45개 분류 123개 기술을 방위산업기술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45) 상생협력법상 ‘기술 자료’는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상생협력법 제2조 제9호)이며, 상생협력법 시행령은 기술 자료를 (i)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ii)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3).

46)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는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며(제2조 제15항), 하도급법 시행령은 기술 자료를 (i)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ii)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 제8항).

2절. 기술유출의 책임 규정

- ▶ 법령별로 보호 대상이 다른 만큼 기술유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각 법령별로 구성되어 있다.
 - 가장 대표적인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사상 책임

- ▶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 및 침해품 폐기 청구,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 나아가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두어 법원이 실손해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손해액의 추정 및 재량손해액 인정에 관한 규정들도 두고 있으며,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용회복청구도 인정하고 있다.

기술유출 행위로 인한 민사구제 규정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상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민사상 조치	침해행위 금지·예방 청구(제10조 제1항) 침해품 폐기 청구(제10조 제2항)	침해행위 금지·예방 청구(제14조의2 제1항) 침해품 폐기 청구(제14조의2 제2항)	좌동
	손해배상청구(제11조) 손해액의 추정(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재량손해액 인정(제14조의2 제5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14조의2 제6항)	손해배상청구(제22조의2 제1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22조의2 제2항)	좌동
	신용회복청구(제12조)	-	-

2. 형사상 책임

- ▶ 또한,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 행위로 인한 민사상 조치 외에 유출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 산업기술에 비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범죄는 가중 처벌된다.

기술유출 행위로 인한 형사책임 규정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보호대상	영업비밀 ⁴⁷⁾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주요 형사처벌 대상행위	① 부정한 목적으로 한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행위,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 삭제·반환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②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행위(제18조 제1항 제2호), ③부정한 행위의 개입 사실을 알면서 취득·사용 행위(제18조 제1항 제3호) ⁴⁸⁾	부정한 수단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 사용, 공개행위(제36조, 제14조 제1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산업기술 사용, 공개 행위(제36조, 제14조 제2호)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제36조, 제14조 제3, 4호)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부정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제36조, 제14조 제3, 4호) ⁴⁹⁾	좌동
	-	-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제36조, 제14조 제5호)
가중처벌 요건	국외유출행위	국외유출행위	좌동
기타	미수범, 예비·음모 처벌 양벌규정	미수범, 예비·음모 처벌 양벌규정	좌동

47) 유출된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침해행위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48) ①~③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3. 행정상 책임

- ▶ ‘산업기술보호법’은 정책적으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산업기술유출 및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이를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하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⁵⁰⁾, 그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이를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⁵¹⁾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⁵²⁾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⁵³⁾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등

- 49)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등
- 50)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 51)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4항, 제11조의2 제5항
- 52)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5항·제7항, 제11조의2 제7항·제9항
- 53)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7호, 제36조 제3항

- ▶ 그 외에 중소기업기술보호법,⁵⁴⁾ 방산기술보호법,⁵⁵⁾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도 각 제도의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54)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상생협력법」도 기술 자료 제공 요구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권한, 개선요구 및 시정조치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음. 하도급법도 기술 자료 제공 요구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권한, 시정조치 명령 권한, 과징금 부과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

55) 「방산기술보호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장

자주 묻는 기술유출 방지 Q&A



제4장 자주 묻는 기술유출 관련 Q&A

Q 회사가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통상적으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는 “대외비”나 “Confidential” 표시를 하거나, 전자파일의 경우 암호를 설정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직원들에게만 암호를 공유하거나, 회사 서버에 저장된 전자파일에 접근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여 권한이 있는 직원들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관리 방식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3자가 객관적으로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이 취급하는 자료를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보안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우리 회사는 기술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데, 영업비밀이 중요한가요?
우리 회사에 문제될 수 있는 영업비밀이 무엇인가요?

A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술 정보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로 관리된 정보들(사업제안서, 원가분석정보, 마케팅 계획, 고객 리스트, 신사업 전략 등) 역시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중심의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생산한 정보으로써 보호할 이익이 큰 정보들은 영업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정보들이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될 것(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춘 것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들을 요구하지 않고,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등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의 고시로 지정하는 기술로서,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등 12개 분야에서 73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0호 폐지제정 2021. 7. 14).

Q 회사 종업원으로 재직 시 중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저인데, 퇴직 후 제가 직접 사용 하거나 타사에 제공하면 안되나요?

A 취업규칙 및 직무발명 규정 등 사규에 의하여 종업원이 개발하거나 만든 정보·자료 등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퇴사 후 (본인이 개발한) 회사 소유의 기술 등을 회사의 동의 없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사에 제공하면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으로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발명진흥법은 회사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업무상 발명하거나 고안한 기술, 업무상 창작한 디자인에 대하여 회사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법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직원이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성하거나 취득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활용, 처분, 기타 관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직무발명 규정 등 사규에서도 회사 종업원이 개발하거나 생성한 정보 또는 자료를 회사가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사용하거나 타사에 제공하는 경우 등 근무규정에 위반하면 그에 따른 책임 및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정도에 따라 종업원은 업무상 배임, 영업 비밀 침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회사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기술 등'을 퇴직 후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인가요?

A 직장에서 취득한 지식과 기술 등이 그 회사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무 중 일반적으로 습득 가능한 기술 등을 퇴직 후 사용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법상 확립된 판례는 종업원이 일반기능·지식·훈련·경험(General skill, knowledge, training, and experience)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비록 고용기간 중 사용자의 자원을 투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자기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영업비밀과 종업원의 일반기능·지식·훈련·경험과의 구별하는 목적은 영업비밀보호와 종업원 이동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Q 영업비밀·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을 침해하면 개인이나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우선, (i)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를 한 개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ii) 산업기술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를 한 개인은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한편 (iii) 국가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를 한 개인은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15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Q 위의 사례 이외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i) NC 리니지3 개발팀원 소속직원 112명 중 총 48명이 집단퇴사하면서 경쟁회사를 설립 하고, 반출한 프로그램 파일을 기초로 경쟁회사의 게임 개발 → 피고 회사의 재량손해액 연대하여 20억원 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6346)
- (ii) 이전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이전회사가 러시아 정부에 납품하는 볼 밸브의 원가정보를 파악한 후, 이전회사를 퇴직하고 경쟁회사를 설립하여 그 원가정보보다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 정부에 입찰 → 피고 회사의 재량손해액 8억원 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48898)
- (iii) LCD 기판유리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자가 중국기업에 취업하고서 친분관계를 통하여 이전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LCD 기판유리 제조 기술관련 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중국기업 LCD 기판유리 제조에 관하여 사용한 사건 → 피고 회사의 재량손해액 40억원 배상(대전지방법원 2011가합7882)

Q 퇴직 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회사와 종업원 간 명시적인 비밀유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업원은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퇴직 후 상당 기간 동안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Q 외부로부터 입수한 타사의 정보를 회사에 보고해야 하나요?

A 타사의 정보를 입수한 경우, 즉시 그 입수의 경위를 소속부서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수한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사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동료들에게 공유할 때에는, 타사로부터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는지, 타사와 공동연구개발계약이나 비밀유지계약 등이 적절히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속부서 상급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 방법으로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수단이란 이러한 행위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독립적으로 개발한 취득, 순수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영업비밀보유자의 허가를 얻은 취득 등 정당한 수단에 의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취득은 모두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행위”에 해당합니다.

Q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에 의한 정보 취득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A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특허제도와 달리 독점배타적 권리를 허여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라, 타인의 연구개발 성과를 부정한 수단으로 탈취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규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경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여 분해하고 그 생산과정을 분석·연구하는 이른바 역설계(逆設計, reverse engineering)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제조방법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역설계 행위 이외에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가 계약을 통하여 역설계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역설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5장

기술유출 방지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제5장 기술유출 방지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재직 중 기술유출 방지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점검방법

다음의 체크사항 중 하나라도 'YES'에 해당하는 기술은 유출시 처벌 가능성이 있음

연번	체크사항
1	재직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료에 대하여 "대외비" 또는 "Confidential"이라는 표기, 암호 설정,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등 해당 자료를 취급하는 사람이 영업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2	재직 중,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재택근무 등의 목적으로 회사 밖으로 반출(메일, 이동식저장장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해)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얻고 있습니까?
3	재직 중, 위와 같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얻고, 경우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4	재직 중, 거래처 등 타사의 영업비밀을 업무상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 하고 있습니까?

퇴직 시 기술유출 방지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점검방법

다음의 체크사항 중 하나라도 'NO'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유출로 판단될 수 있음.

연번	체크사항
1	퇴직 시,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2	퇴직 시,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Google Drive 등)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3	퇴직 시, 개인 메일(Gmail, 네이버메일 등)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4	퇴직 시, 개인 PC·노트북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5	퇴직 시,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6	퇴직 시, 집에 저장·보관된 회사의 기술 자료(특히 출력문서)를 모두 반환·폐기하였습니까?

부록

기술유출 관련 법령




부록1.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관련)

분 야	기술명
반도체 (11개)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픽셀 1 μ m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기술	
디스플레이 (2개)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전기전자 (4개)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 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자동차·철도 (9개)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제조 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분 야	기술명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TDCS 제어진단·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철강 (9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 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기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 μ m급) 제어기술
	답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조선 (8개)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
	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 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
원자력 (5개)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분 야	기술명
정보통신 (7개)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기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쿼텀(Quantum) 리피터 기술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우주 (4개)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생명공학 (4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중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기계 (7개)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로봇 (3개)	저진동, 저소음, 동적 안정감을 갖춘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



부록2. 핵심부리기술(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분야	핵심 부리기술명
주조 (49개)	대형 구조용 비철 주조기술 (용탕 주입량 1ton/회 이상)
	초대형 주철·주강 기술 (두께 0.5mm이상)
	듀플렉스(Duplex) 주강 주조 기술
	최종형상근접(Near-net shape) 주조기술
	주조공정 시뮬레이션 기술
	기능성 비철금속 연속주조기술 (Al, Cu, Ag, Si, Ti 등)
	박육내열 부품 주조 기술 (두께 4mm이하, 내열온도 800℃이상)
	칠-프리(Chill-free) 조직 초박육 주조기술
	다기능 복합소재 주조기술
	복잡형상 일체화 주조기술
	초고순도 대면적 스퍼터링 타겟(Sputtering target) 주조기술 (폭 1m이상)
	경량 방열소재 주조기술
	반(半)응고 주조기술
	무(無)압탕·무(無)탕도 주조기술
	무기물 점결제 기술
	천연 주물사 대체 및 재사용 기술
	미세조직 제어기술
	고활성 금속의 주조기술
	이종(異種) 재질 접합 일체형 원심주조기술
	열처리 가능 다이캐스팅 기술
초후육 구상흑연주철 주조기술 (두께 30mm이상)	
스크랩 사용율 향상 주조기술 (사용율 50%이상)	
금속간 화합물의 정밀주조기술	
주철의 금형주조기술	
고주파 유도식 금속 용해 주조기술	
고순도 소재 주조기술 (5N급 이상)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외부장 인가 주조기술
	유가 금속 회수 주조기술
	저속 및 고속충진 다이캐스팅 기술
	경량 이종소재 일체형 브레이크 디스크 하이브리드 주조기술
	고강도/고연신/고Mg/ 알루미늄합금 중간재 연속주조 및 후공정 기술
	CFRP/경량합금 복합주조기술
	가스터빈 초내열합금 터빈블레이드/베인/세그먼트 정밀주조기술
	열변형 제어 스틸/알루미늄 캘리퍼 하이브리드 주조기술
	가솔린 엔진용 일체형 터보차저 터빈하우징 제조 기술
	주물의 품질 고도화를 위한 통전 주조 기술
	Nb3Sn 초전도체 Sn-Ti 합금 rod 주조기술
	배기매니폴드 일체형 터빈하우징 및 실린더헤드 알루미늄 로스트폼 주조기술
	하이브리드 차량 유도전동기 회전자용 동다이캐스팅 기술
	용접재료용 Be무첨가 고힘량Mg Al-Mg합금 연속주조 및 후공정 기술
	초대형 주조품 비파괴 3D 영상기반 내부검사 장치 및 부품검사기술
	고강도 내열주철 박육주물 제조기술
	생체재료용 동결주조 기술
	타이타늄 합금 연속 주조 공정기술
	주철소재 절감을 위한 회수율 고도화기술
	고온강도 및 내마모성 향상 피스톤용 과공정 Al-Si 소재 주조기술
	선박용 대형 주철주물의 용탕공정 모니터링 기술
	고정밀 공작기계용 저열팽창 주물 및 고감쇄 복합소재 주조기술
	경량 커넥팅로드용 Ti 합금 정밀 주조기술
금형 (47개)	이종(異種)소재 사출·프레스금형 성형기술
	난(難)성형 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비철 경량화 금속 프레스금형 성형기술 (Al, Mg, Cu 등)
	분말사출금형 성형기술
	파인포밍(Fine forming) 프레스금형 성형기술
	복합 금형 공정 제어기술
	인몰드(In-mold) 금형 성형기술

분야	핵심 부기술명
	무(無)도장 사출금형 성형기술
	쾌속 금형 제조기술
	섬유 강화 복합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열경화성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고색감·고질감 동시 구현 외장재 금형 성형기술
	대면적 박육 사출금형 성형기술 (크기 40inch이상, 두께 3mm이하)
	유연소재 프레스금형 성형기술
	공정 일체화 금형기술
	마이크로·나노패턴 금형기술
	서보프레스(Servo press) 금형기술
	바이오플라스틱용 금형 성형기술
	광학소재용 금형 성형기술
	방열소재용 사출금형 성형기술
	다층필름용 사출금형 성형기술
	IT융합 금형기술
	서브마이크로 초정밀 금형기술
	의료부품용 금형 성형기술
	열간 프레스용 금형 성형기술
	다층막 블로우성형 금형기술
	고탄성재 사출금형 성형기술
	LSR(Liquid Silicone Rubber) 후육 광학렌즈 사출금형 및 성형기술
	대면적 투명 플라스틱 사출금형 및 성형기술
	전기전자 일체형 플라스틱 부품 제조를 위한 미세구조 인서트금형 및 성형기술
	다층레이어 초정밀 블랭킹 금형기술
	RCC(Recyclable Carbon Composite) 적용 하이브리드 부품제조를 위한 복합금형 기술
	금속 광구조색 구현을 위한 one-step 공정기반 금속 대 금속 나노임프린팅 금형 및 성형기술
	글라스의 투명, 박육 및 고FOV특성을 갖는 Holographic Wave guide 패턴가공 기술
	사출금형 밀핀절삭가공 자동화 프로세스 기술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p>고종횡비미세구조플라스틱부품사출금형및성형기술</p> <p>1.5GPa급 자동차 차체용 부품제조를 위한 고효율 HSHT(Hot Stamping-Hot Trimming) 복합금형 시스템</p> <p>금속(표피)-폴리머(바디) 일체형 인몰드(In-Mold) 금형 및 성형기술</p> <p>복합성분 검출을 위한 진단검사용 플라스틱 카트리지 대량생산 금형성형기술</p> <p>3차원 유리곡면 성형을 위한 금형기술</p> <p>세포 배양을 위한 생체모사형 다공성 마이크로/나노 기저막 3차원 패턴 성형 및 다층 적층 금형기술</p> <p>STACK MOLD 금형 및 성형기술</p> <p>비정렬형 마이크로 구조체 기계적 가공기술</p> <p>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내장 루프 인너부품 및 ADAS 전장 일체화 대면적 Base 부품 사출금형 및 성형기술</p> <p>알루미늄 대형 구조물 양산을 위한 프레스금형설계 및 성형기술</p> <p>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FRP/알루미늄 성형 및 접합기술</p> <p>3차원 형상 전자부품-플라스틱 일체형 Interconnect Device 사출성형기술</p>
소성 가공 (49개)	<p>경량소재 단조 및 압출기술 (Al, Mg, Ti 등)</p> <p>롤 포밍(Roll forming) 기술</p> <p>최종형상근접(Near-net shape) 성형기술</p> <p>대면적 판재 성형기술 (단면적 1m²이상)</p> <p>미세 부품 성형기술 (μm급)</p> <p>강재의 온간-냉간-열간 공정복합성형기술</p> <p>고강도 판재 열간 프레스 기술 (GPa급)</p> <p>압력매체 응용 성형기술</p> <p>고세장비(高細長比) 다단 성형기술</p> <p>조직제어 단조기술</p> <p>경량금속 초소성 이용 성형기술</p> <p>초미세·초정밀 프레스 성형기술</p> <p>내열합금 롤 및 방사(Roll & Radial) 성형기술</p> <p>후(厚)판재 프레스 단조 복합 성형기술 (두께 3mm이상)</p> <p>특수합금의 미세 관재·선재 성형기술</p>

분야	핵심 부리기술펙
	무(無)열처리 고강도 소재 성형기술
	초고압·등방압 성형기술
	초정밀 냉간 단단모머 성형기술
	윤활제 저사용 저마찰 성형기술
	이종(異種)접합 판재의 프레스 성형기술
	초극박판재 고정밀 프레스 성형기술 (0.2mm이하)
	대면적 후판재 3차원 자유곡면 성형기술 (단면적 1㎡이상, 두께 3mm이상)
	이종(異種)재료 동시압출 기술
	복합재 일체화 성형기술
	페열 활용 성형기술
	등온 및 정속제어 고정밀 압출기술
	특수성형기술 (반(半)용융 단조, 무금형 판재성형, 정수압 압출 등)
	경사기능 구현 성형기술
	대면적 소재 연속 국부 성형기술 (폭 1m이상)
	1.8GPa급 초고장력강판 열간 성형기술
	강도 YS 500MPa 초고강도 AL 합금의 열간 압출성형 기술
	컴프레스크로압축기용Al-Si-Mn소재단조기술
	알루미늄 판재 롤 포밍(roll forming) 기술
	고강도,고내식 DUPLEX 스텐레스 소재 성형기술
	전기차 모터코어용 0.1~0.2t 초박 실리콘 강판 성형 및 적층기술
	고력알루미늄을 이용한 고강도 항공용 부품 단단성형기술
	냉장고 컴프레서 고강도 피스톤 정밀단조 기술
	경량 판재/판재 차체부품 제조를 위한 전자기 성형 기술
	자동차용 모터 성능향상을 위한 비히토류계 영구자석 성형 기술
	전자기하이드로포밍을 이용한 연료전자자동차용 금속부리판 제조 기술
	선박용 대형부품의 미세조직 제어 점진형단조 기술
	로봇용 정밀 감속기 부품 정밀단조 기술
	초고강도 폐단면 차체부품 제조를 위한 롤-블로우 성형기술
	고감성 인스트루먼트 패널제작용 금속필름 개발 및 패드타입 패널 성형기술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전기자동차 인버터 전력모듈 SiC 냉각채널 성형기술
	전기차 배터리모듈용 경량소재 복합형상 성형기술
	항공기용 중대형 구조재 Ti 합금 단조기술
	플렉시블 OLED용 cover glass 성형기술
	생체용 소재 성형기술
용접 (50개)	후(厚)판 대입열 용접재료·시스템 기술
	무(無)예열 아크용접재료기술
	경량합금 용접재료기술
	내마모·내부식 오버레이 용접재료기술
	고강도 강재 용접재료·시스템 기술 (GPa급)
	극후판 협개선(Narrow-gap) 용접기술
	에너지 저감형 용접전원 시스템기술
	스퍼터 저감(Spatter-free) 파형제어 용접 시스템기술
	원격 제어 용접 시스템기술
	플랜트 핵심기자재 용접기술
	지능형 결합제어 저항 점용접시스템 기술
	초경량 용접 안전보호 기자재기술
	저온 특성 우수·고인성 용접재료
	용접 품질평가·제어시스템기술
	친환경 원료 절감형 브레이징(Brazing) 재료·시스템 기술
	전장용 고온 솔더 제조기술
	중저온 접합용 무연솔더 소재기술
	3D 접착용 언더필 소재·공정기술
	초미세 피치용 솔더페이스트 및 솔더볼 제조기술
	관통홀(Via hole) 관련 3D 적층 접합기술
	마이크로 범프 제조기술
	플렉시블 & 스트레처블(Flexible & Stretchable) 모듈 대응 접합기술
	저가형 본딩와이어(Bonding wire) 소재·공정기술
	초미세 피치 대응 SMT 공정기술
	전자접합 파손해석 및 수명 예측기술

분야	핵심 부기술명
	SMT·검사장비기술
	SMT용 원·부자재 제조기술
	멀티 소스 하이브리드(Multi-source hybrid) 접합공정 기술
	고방열 전자패키지 접합기술
	나노 접합재료 제조·공정기술
	Fitting파이프의 스마트클래딩 용접 공정시스템
	초미세 부품 대응 무연솔더 접합 소재 및 공정 기술
	고속/정밀 레이저용접 장비 및 공정 기술
	웨어러블 모듈용 유연기판 저열변형 접합기술
	대형부품을 위한 선형마찰용접(Linear Friction Welding) 기술
	미래형 경량차체 부품 적용 알루미늄 및 GPa급 강재의 스테드용접 공정기술
	고장력/초저온/충격인성 보증용 강재의 용접기술
	저비용/고내구성/저결함 진공접합기술
	고강도/고내식 알루미늄합금의 용접 소재 및 공정 기술
	전기차 전장모듈용 고방열 접합기술
	Si기반 스마트용접 장비/부품 관리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용 Warpage 저감 접합 기술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용접품질 검사 기술
	차체 부품용 CFRP-난용접성 금속판재 이종접합 기술
	친환경 자동차용 와이어하네스 경량화 및 고효율화를 위한 고신뢰 부품 접합기술
	IoT 기반 용접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크로 LED용 범프 형성 및 대배열 동시 실장 기술
	자동차 및 조선 샤프트 부품용 원통형 CFRP-금속 이종접합 기술
	초미세 접속 피치 인터커넥션을 위한 실장 접합기술
	해양플랜트 유지보수를 위한 건식 수중용접 기술
	4대 중금속 무(無)사용 도금기술 (Hg, Pb, Cd, Cr6+)
표면 처리 (51개)	기계부품 저마찰 표면처리기술
	유무기 하이브리드 습식 표면처리기술
	건식 하이브리드 공정 표면처리기술
	불용성 전극 내구성 향상 기술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미세 구조체 도금기술
	유연기판 제조용 습식 도금기술
	합금 전주기술
	시스템 반도체 박막 형성기술 (nm급)
	금속 재활용 도금기술
	내·외장부품 내구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광전변환부품 신뢰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친수성·소수성 표면 제어기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습식 도금기술
	인쇄공정 적용 도금기술
	경량소재 내식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Mg, Al)
	미세 형상 구현 전주기술 (μm 급)
	무(無)질소 아노다이징(Anodizing) 공정기술
	난도금성 소재 전해 도금기술
	금형 표면개질 도금기술
	복잡형상 상압 플라즈마 세척기술
	나노 입자 분산 복합도금기술
	태양전지용 확산층 및 전극 형성기술
	LED 대응 고반사·고방열 표면처리기술
	크롬(Cr) 대체 습식 표면처리기술
	전기화학 반응 전극 도금기술
	투명기판 전극 형성 표면처리기술
	전자부품 솔더링(Soldering) 향상 표면처리기술
	폐수 무방류 공정기술
	유해성 유기물 저감 공정기술
	직접 가열·냉각 도금공정기술
	비평면 나노스케일 구조 ALD (Atomic Layer Deposition) 기술
	옴니포빅 표면처리기술
	도금기술 기반 고감성/고경도 금속 칼라링 표면처리 기술
	도금폐액(공정부산물/공정수)을 활용한 재자원화 공정기술

분야	핵심 부리기술명	
	초고속 전기도금 용액/공정기술	
	웨어러블 기판 고밀착력 전도성 필름 형성 기술	
	배관설비부품의 고내부식 Zinc Flake 복합코팅기술	
	아연니켈합금 도금조 내 시안-니켈 착화합물생성 억제 전극 및 선택적 시안 제거 공정 기술	
	고성능 생체신호 측정 센서용 표면처리 기술	
	유연기판용 직접패턴 도금 기술	
	기능성 도료 기반 표면처리 기술	
	3D 마이크로 부품 제조용 전주기술	
	고종횡비 형상체 내부코팅 경사 스퍼터링 장치	
	전자파 차폐 및 그라운드링 부품 표면처리 공정 기술	
	경량금속의 내부식 양극산화 표면처리 기술	
	고주파 대응 차세대 PCB 표면처리 공정기술 개발	
	반도체 초미세배선용 초고속도(5N급) 황산동 제조기술	
	광학기공용 기능성 투명소재/금속소재 표면구조 제어 및 표면처리 기술	
	페이스트 인쇄 공법에 의한 Cu 배선 형성 기술	
	Au-Sn 도금 용액 및 공정기술	
	열처리 (40개)	초고속 냉각(Intensive quenching) 기술
		고윤활 복합열처리 기술 (마찰계수 0.1이하)
		내열·전도성·고내식성 다기능 DLC 코팅기술
		인공 관절소재 윤활 코팅기술
미세부품의 정밀 코팅기술 (10 μ m이하)		
분위기 자동제어 가스질화·가스침탄 기술		
연속식 진공침탄 기술		
저변형 냉각기술 (20 μ m이하)		
저온 침탄질화기술 (700 $^{\circ}$ C이하)		
수중 고주파 열처리기술		
이종(二種) 주파수 윤곽 경화(Dual phase contour hardening) 기술		
상(狀)제어 질화기술		
저압 질화기술 (200-300torr)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광휘 구상화 열처리 기술
	다이 퀴칭(Die quenching) 기술
	초대형 부품 열처리 기술 (직경 3m이상)
	고속입자 활용 표면개질 기술 (200m/s)
	롤링 경화(Rolling hardening) 기술
	저변형 고인성 금형 열처리기술 (20J/cm ²)
	극저온 처리 기술 (-190℃이하)
	고에너지 국부 열처리 기술
	경사 기능형 표면층 제어기술
	내마모 코팅기술 (2,000Hv급)
	세라믹-금속 복합형 코팅기술
	무기계 친수성·소수성 코팅기술
	고밀도 플라즈마 기술
	나노 복합상(Nano phase) 열처리 기술
	변형 시뮬레이션 기술
	플라즈마 침탄기술
	지능형 침탄열처리 최적솔루션 기술
	에너지 저소비형 멀티챔버 진공로 기술
	열처리 저비용화 지그 기술
	대형 항공기용 랜딩기어 소재부품 저탄탄 열처리 기술
	공작기계 주축 저변형 침탄/질화 기술
	온간·열간금형 열처리 및 코팅기술
	액화천연가스 압축펌프 부품 저마찰 코팅기술
	열처리 소재부품 고성능화 초고속 마이크로 쇼트피닝 기술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알루미늄 합금소재 엔진부품 표면경화기술
	자동차용 중공부품 오스템퍼링 열처리기술
	400℃/sec 이상 고속냉각 퀴칭경화 기술
사출· 프레스 (8개)	프레스·사출 복합성형 기술
	에너지 저감 압출 프레스 시스템 기술

분야	핵심 부리기술명
	사출성형-칼라코팅 복합 인몰드 도색 성형 기술
	일반수지-발포수지 이중사출을 위한 공정 균일성 자동제어 기술
	복합재 균일압력 프레스 성형 기술
	환경조건 자가적응 인공지능 사출성형기술
	연속 섬유 열가소성 복합재 인서트 압출 블로우 성형 기술
	경량 섬유강화 복합재 프레스 성형 기술
정밀가공 (8개)	고정밀 저소음 베어링 가공 기술
	초경합금 절삭공구 제조 기술
	길이 10m 이상급 초대형 부품 정밀 가공 기술
	초내구성 광학렌즈 정밀 가공 기술
	고정밀 감속기 가공기술
	5축 머시닝센터 기반 초정밀 가공기술
	미세 Burr 제거 레이저 가공 기술
	초정밀/난삭재 가공 기술
적층제조 (8개)	적층제조 활용 주형 제작 기술
	3D프린팅 재생/수리 적층제조 기술
	적층제조용 고품질 금속 및 세라믹 분말 제조 기술
	인공지능 기반 금속 와이어 적층제조 기술
	1 μ m 이하 고정밀 패턴 적층제조 기술
	초정밀 절삭공구 부품용 적층제조 기술
	금속 적층제조를 위한 표면 후처리 공정 기술
	고내열성 복합소재 적용 적층제조 기술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 (8개)	고내구성 배터리 파우치 필름 생산 기술
	반도체 패키징 기판용 층간 절연 필름(Build Up Film) 기술
	옥외 디스플레이용 적외선 차단 필름(IR Cut Film)
	내열성 및 산축성이 확보된 필름 히터 제조공정 기술
	나노소재 함침 기능성 필름 제조 공정기술
	불소계 고분자/구리 필름 제조 공정 기술
	인장특성 강화 생분해성 수지 필름 압출성형 기술
	바이오매스 기반 산업용 제지 기술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로봇 (4개)	로봇 시스템 활용 대형부품용 고품위 주조공정 기술
	로봇 시스템 활용 주조 후처리 공정 기술
	로봇 시스템 활용 후가공 공정 기술
	로봇 시스템 활용 제품 순회검사 기술
센서 (3개)	절삭 공정 데이터 획득을 위한 센서 및 IoT 기술
	롤포밍 공정 데이터 획득을 위한 센서 및 IoT 기술
	스마트 금형 공정 데이터 획득을 위한 센서 및 IoT 기술
산업지능형 SW (4개)	인공지능 기반 금형수명 및 성형품질 예측 기술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제품성능 연계 증착공정 예측제어 기술
	Intelligent CAM/IoT 기반 절삭가공 지능화 기술
	정밀가공과 OMM 측정공정을 통합하는 지능형 시스템 기술
엔지니어링 설계 (4개)	고강도 경량소재 부품의 프레스 성형공정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술
	고강도 경량소재 부품의 열간단조 지능화 시뮬레이션 기술
	냉각채널 일체형 사출 금형 제조 시뮬레이션 기술
	다단 프레스 지능화 공정 시뮬레이션 기술



부록3. 기술유출 관련 법령

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 특허청)

내용	법조문
보호대상 :영업비밀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p>
침해로 보는 행위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p> <p>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p>

내용	법조문
	<p>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민사책임	<p>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 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p> <p>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물건의 양도수량(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등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등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 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내용	법조문
	<p>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가 없었으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p> <p>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p> <p>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p> <p>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p>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내용	법조문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형사책임	<p>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8조의2(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18조의3(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p>

내용	법조문
<p>행정책임</p>	<p>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p>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도적 지원</p>	<p>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p> <p>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p> <p>제14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p>

내용	법조문
	<p>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30.></p> <p>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p>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p>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2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내용	법조문
<p>보호대상 : 산업기술</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p>침해로 보는 행위</p>	<p>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내용	법조문
	<p>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p> <p>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p> <p>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p> <p>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p> <p>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p> <p>7. 제11조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p> <p>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민사책임	<p>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p>

내용	법조문
	<p>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①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한다)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형사책임	<p>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p> <p>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p>

내용	법조문
	<p>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제37조(예비·음모)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행정책임	<p>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제도적 지원	<p>제22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p>

내용	법조문
	<p>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산업기술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p>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산업기술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p>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③ 중소기업기술보호법(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내용	법조문
보호대상 : 중소기업기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p>
침해로 보는 행위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p> <p>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p> <p>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p>
행정책임	<p>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p> <p>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p>

내용	법조문
	<p>제8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소기업자등이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고 및 공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5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제도적 지원</p>	<p>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p> <p>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내용	법조문
	<p>제8조의4(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기술 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 자료 임치제도를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기록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 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④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방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의 침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운영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보호관제서비스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그 밖에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내용	법조문
	<p>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보안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4] 방산기술보호법(소관부처 : 국방부)

내용	법조문
<p>보호대상 : 방위산업기술</p>	<p>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p>침해로 보는 행위</p>	<p>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p>형사책임</p>	<p>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p> <p>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p>

내용	법조문
	<p>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p> <p>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p> <p>제22조(예비·음모) ①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행정책임	<p>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제18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p>
제도적 지원	<p>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 기술의 수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p>

내용	법조문
	<p>다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0. 3. 31.></p> <p>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p>

5 대·중소기업상생법(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내용	법조문
<p>보호대상</p>	<p>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침해로 보는 행위</p>	<p>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 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p>

내용	법조문
	<p>1. 해당 기술 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p> <p>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p> <p>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해당 기술 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을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24조의4(비밀유지 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5조(준수 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p> <p>13. 기술 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p> <p>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p> <p>1)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p> <p>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p> <p>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p> <p>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 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p> <p>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p> <p>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p>

내용	법조문
민사책임	<p>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p>④ 삭제</p> <p>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 나.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 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 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내용	법조문
	<p>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p> <p>②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p>제40조의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 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 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p> <p>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 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형사책임	<p>제41조(벌칙) ① 타인의 기술 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p> <p>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p>

내용	법조문
	<p>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3. 삭제</p> <p>4. 제40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p> <p>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행정책임</p>	<p>제42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43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내용	법조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도적 지원	<p>제24조의3(기술 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 자료의 제호·종류·제작연월일 2. 기술 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p> <p>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기업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중소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내용	법조문
	<p>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④ 중소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⑦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 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p>

내용	법조문
	<p>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p> <p>③ 중소기업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p> <p>④ 중소기업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p> <p>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p> <p>제28조의2(교육명령 등) ① 중소기업부장은 제27조제7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에 따라 제27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비용은 그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교육명령 등의 조치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이 고시한다.</p> <p>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p>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p>

내용	법조문
	<p>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⑥ 하도급법(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법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련법률	보호대상 :하도급거래질서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침해로 보는 행위	<p>제12조의3(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p> <p>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p> <p>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 자료의 범위, 기술 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p> <p>제12조의3(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p> <p>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p>

내용	법조문
	<p>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p> <p>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 자료의 범위, 기술 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p>
<p>민사책임</p>	<p>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내용	법조문
형사책임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2020. 12. 29.></p> <p>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p>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p>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2조(고발) ①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p>

내용	법조문
	<p>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p> <p>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p> <p>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p> <p>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p>
<p>행정책임</p>	<p>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 <p>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내용	법조문
	<p>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p> <p>2. 제3조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p> <p>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p> <p>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p> <p>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p> <p>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p>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p> <p>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p> <p>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당기순손실</p> <p>2. 부채비율</p> <p>3. 그 밖에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5조의4(상습범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p>

내용	법조문
	<p>법률」 제119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 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경고 또는 시정조치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단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p> <p>⑥ 심의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의5(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른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p>

내용	법조문
	<p>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p>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⑤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내용	법조문
	<p>⑥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p> <p>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p>
<p>제도적 지원</p>	<p>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으로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p>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나.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다.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2. 제1호 각 목의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p>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내용	법조문
	<p>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p> <p>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p> <p>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p> <p>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에 따른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p> <p>② 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p>

내용	법조문
	<p>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